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19 선고 2020가단115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지구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위 조합으로부터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반환 정산에 따라 정산 반환금 7,35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20. 8. 4. 원고와 함께 D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원고에게 위 정산 반환금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에 관하여 D 법무사로부터 상담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합에 대한 정산 반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만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0. 8. 4.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735만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같은 날 발송되어 그 무렵 위 조합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채권 중 원고에게 양도한 735만 원을 제외한 66,150,000원(7,350만 원 - 735만 원)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사정 상 피고 명의를 빌려 위 조합원으로 가입 후 조합원 분담금 또한 원고가 납입한 것으로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여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것인데 원고 모르게 우연히 채권양도통지서의 양도금액에 오기가 있어 735만 원만 양도되는 것으로 작성되었고, 피고가 이를 기회로 삼아 나머지 금원을 모두 수령하여 간 것인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가져간 이 사건 채권 중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실제 조합원이 되어 그 조합원 분담금 또한 부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귀속주체는 피고이다. 그 중 735만 원만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 후 D 법무사 또한 이를 확인해준 바 있다. 이 사건 채권양도에 착오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원피고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 분담금은 사실상 원고가 조달하여 납입해 왔던 것이어서 이 사건 채권의 귀속 주체는 원고이고, 그로 인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나 법무사 사무소에서의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상 착오로 채권양도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으며, 이를 기화로 피고가 원고도 모르는 사이 나머지 이 사건 채권금액을 수령하여 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와 피고는 사실상 남녀관계에 있었고, 원고가 사정이 있어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E회사과 F식당 등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그 점에 관하여 법정에서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해 피고는 이를 명확히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나) 조합 가입 관련서류 및 분담금 납부 관련서류 등을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원고 명의로 된 E회사의 사업용 계좌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합원 가입 역시 원고가 피고 명의를 이용하였던 것이고, 조합원 분담금 역시 원고가 앞서 본 사업체로부터 발생한 금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납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 분담금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일응 피고 명의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E회사과 F식당 사업을 정리하면서 입금된 돈이 위 조합원 분담금의 재원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은 오히려 위 가), 나)항과 같은 사정의 당연한 귀결에 불과할 뿐 그 자체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온전히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할 뿐이며, 피고는 위와 같은 형식적 사실관계를 보충할 만한 실질적 증거를 더 이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채권 중 10%에 불과한 735만 원 정도의 금원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확보한 후 지급할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의 극히 일부를 양도하기 위해 굳이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가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할 필요까지 있었는지 의문이 들며, 원고와 사실상 친분관계가 없는 D 법무사를 찾아가 정식으로 상담까지 한 것은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음부터 이 사건 채권 전체에 관하여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서로간의 합의 내지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후 한참 동안 그 액수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알자마자 곧바로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형사고소까지 하였으며, D 법무사 또한 자신의 사무소에서 작성된 채권양도통지서에 착오가 있음을 인정하며 즉시 피고에게 이를 시정해 달라는 의사를 직접 전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까지 하였으며, 마침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입장을 일관하고 있는바, 전문직인 법무사가 그 착오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 증언의 주된 취지 또한 별다른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더욱이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와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닌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에서도 당초 D 법무사 사무소에 찾아와 이 사건 채권 전액 즉 7,350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 방법을 상담하고 그에 따라 같은 금액을 양도하기로 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에 들어갔다는 증인의 증언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이후 2020. 8. 25.경 피고가 D 법무사를 직접 찾아가 양도금액이 제대로 된 것임을 확인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D 증인의 증언 상 그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밝혀진 점에서도 피고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결국 7,350만 원을 양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채권양도통지서는 그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변론에서의 진술 과정에 비추어 D 법무사는 그 후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고, 원고 또한 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만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그 과정에서 금액 기재가 당초 합의된 것과 다르게 되었음이 인정되고, 그 후 원고의 확인 없이 곧바로 채권양도통지서가 발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이 사건 채권은 7,350만 원이고 채권양도통지서에는 그 중 10%인 735만 원만 기재되었는데, 착오기재에 의해 마지막 '0'단위가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전체적인 작성 과정에 보다 부합하는 설명이다. 피고는 본래 735만 원만 양도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원고와 사이에 그와 같은 금액을 특별히 정한 경위 및 이유, 원인관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판단에 따르면, 피고는 정당한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기재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 이 사건 채권액 중 6,615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1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정대